

증평균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[2003. 12. 15]

개정 2007. 11. 23 조례 제264호

일부개정 2012. 5. 18 조례 제42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 5. 18>

제2조(진료수가) 진료수가는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정수한다. 다만, 「증평균 보건소 수가 조례」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11. 23, 2012. 5. 18>

제3조 삭제 <2012. 5. 18>

제4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 5. 18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 11. 23 조례 제26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 5. 18 조례 제42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